

# 공 고

##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- 23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11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###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, 『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, 과징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**반송**되거나 **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**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**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함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

#### 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# 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## 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(또는 5%)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과징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원)

연번	세목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과태료	0178160004530000142	윤현진(제국통신)	502-29-217**	1,500,000	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50길 (효목동)
2	과태료	0178190004530002382	(주)퍼니뱅크	129-86-695** 131111-02997**	24,000,000	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**6 (문정동, *층)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7-*, *층
3	과징금	0178190004530002329	(주)퍼니뱅크	129-86-695** 131111-02997**	41,100,000	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**6 (문정동, *층)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7-*, *층